

의안번호	2216909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6.3.4.
추 계 번호	26E094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1인당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으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7 8조 900억원, 2031년 5조 5,566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30조 1,401억원(연평균 6조 280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기본공제 확대 (안 제50조제1항)	-80,900	-58,481	-52,471	-53,982	-55,566	-301,401	-60,28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0조제1항 (기본공제)	○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 확대 - (현행)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*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* 본인 및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)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- (개정안)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명당 2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0조제1항 (기본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(징수기준)
-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(기본공제) 2024년 근로소득자(결정세액 있는자)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.3조원, 26.3조원으로 각각 2019~2024년(5년) 동안 연평균 1.3%, 6.7% 증가
 - 최근 들어 공제금액 규모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추세

[표 2]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적용인원	12,237	12,916	13,629	13,959	14,228	13,394
(증가율)	(1.1%)	(5.5%)	(5.5%)	(2.4%)	(1.9%)	(3.3%)
공제금액	342,641	353,294	364,928	365,300	362,598	357,752
(증가율)	(0.6%)	(3.1%)	(3.3%)	(0.1%)	(-0.7%)	(1.3%)

주: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적용인원	7,844	9,334	10,270	11,475	11,914	10,168
(증가율)	(5.1%)	(19.0%)	(10.0%)	(11.7%)	(3.8%)	(9.8%)
공제금액	193,490	223,350	240,548	269,772	263,248	238,082
(증가율)	(1.9%)	(15.4%)	(7.7%)	(12.1%)	(-2.4%)	(6.7%)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총급여(종합소득금액) 규모별로 기본공제금액 인상 전/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,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
 - 소득구간별로 현행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의 과세표준 산출 후, 기본세율을 적용해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산출
 -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세액공제·감면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감소분 도출 후 소득구간별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감소분 추계
 - 개정안에 따라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증가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본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

(3) 추계 결과

-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4년 기준 4조 6,3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근로소득세는 2조 9,042억원, 종합소득세는 1조 7,3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제외하여 추계

[표 4]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근로소득세, 2024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현행	1인당 과세표준		1인당 결정세액		결정세액 변동분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기본공제 인원 ¹⁾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	
	A	B0	B1	C0	C1	D=C1-C0	E=D×A
합계	10,440,958	-	-	-	-	-	-29,042
1천만 이하	-	-	-	-	-	-	-
1.5천만 이하	92,203	5.2	4.2	0.0	0.0	-0.01	-11
2천만 이하	421,929	7.2	6.2	0.1	0.0	-0.03	-142
3천만 이하	1,708,854	11.8	10.7	0.2	0.1	-0.04	-665
4천만 이하	1,756,431	17.5	16.3	0.5	0.4	-0.12	-2,109
4.5천만 이하	797,082	22.2	20.8	1.0	0.9	-0.15	-1,183
5천만 이하	718,973	25.4	23.9	1.4	1.2	-0.17	-1,248
6천만 이하	1,186,062	30.6	28.8	2.1	1.9	-0.21	-2,548
8천만 이하	1,615,450	41.4	39.2	3.6	3.3	-0.29	-4,630
1억 이하	992,340	58.3	55.7	6.7	6.2	-0.55	-5,498
2억 이하	1,038,361	96.1	93.3	16.6	15.6	-0.95	-9,843
3억 이하	77,524	197.6	194.8	53.1	52.1	-1.03	-800
5억 이하	27,162	327.0	324.4	102.6	101.6	-1.02	-277
10억 이하	7,220	604.9	602.4	215.2	214.1	-1.03	-74
10억 초과	1,367	1,885.6	1,883.4	776.7	775.7	-1.00	-14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 기본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,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신고자 비율(국세청 제공)을 반영하여 추정함

2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, 「2025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종합소득세, 2024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종합소득금액 규모	현행	1인당 과세표준		1인당 결정세액		결정세액 변동분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기본공제 인원 ¹⁾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	
	A	B0	B1	C0	C1	D=C1-C0	E=D×A
합계	8,980,085	—	—	—	—	—	-17,324
1천만 이하	2,044,490	3.0	1.8	0.08	0.03	-0.05	-1,004
2천만 이하	2,192,644	9.8	8.4	0.3	0.2	-0.06	-1,320
3.5천만 이하	1,994,954	19.3	17.8	0.9	0.7	-0.18	-3,531
4천만 이하	398,792	28.6	26.9	2.0	1.8	-0.21	-847
5천만 이하	567,953	35.0	33.2	2.8	2.6	-0.23	-1,314
6천만 이하	384,122	44.0	42.0	4.0	3.7	-0.25	-973
8천만 이하	470,457	57.1	55.0	6.3	5.9	-0.45	-2,103
1억 이하	268,147	76.2	74.0	10.3	9.8	-0.47	-1,261
2억 이하	445,248	121.2	118.9	23.0	22.3	-0.73	-3,268
3억 이하	100,774	226.1	223.9	56.0	55.3	-0.77	-776
5억 이하	63,398	360.3	358.2	100.9	100.1	-0.81	-512
7억 이하	20,905	564.5	562.4	173.4	172.5	-0.85	-177
10억 이하	12,862	802.2	800.1	260.2	259.4	-0.85	-109
10억 초과	15,339	2,419.8	2,417.8	892.7	891.9	-0.84	-129

주: 1)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이 있는 기본공제 신청자 수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, 기본공제 신청자 수(2024년 귀속 1,157만명)와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수(2024년 귀속 898만명)의 차이가 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수를 활용함

2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, 「2025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기본공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
 - 근로소득세 0.9%, 종합소득세 5.6%
- **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** 소득세수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31조 4,789억원(연평균 5조 2,46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29,549	-29,806	-30,066	-30,328	-30,591	-30,858	-181,198	-30,200
종합소득세	-19,331	-20,419	-21,569	-22,784	-24,067	-25,422	-133,591	-22,265
합계	-48,880	-50,226	-51,635	-53,111	-54,658	-56,280	-314,789	-52,465

- **소득세 징주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** 2027년 8조 900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0조 1,401억원(연평균 6조 28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7년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('27년 2월)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'27년 5월)로부터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 동시 발생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51,904	-37,517	-30,328	-30,591	-30,858	-181,198	-36,240
종합소득세	-28,996	-20,963	-22,144	-23,391	-24,708	-120,202	-24,040
합계	-80,900	-58,481	-52,471	-53,982	-55,566	-301,401	-60,28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